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정준호 · 차지호
김주영 · 이연희 · 김한규
김영배 · 김현정 · 이상식
손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,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,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·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,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·보고·지휘·증거관리·사

건기록 열람·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,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·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, 소속 기관의장이 사건 재배당, 직무배제, 수사정보 접근 제한,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).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친족 등 관련 사건의 신고 및 부당 관여 금지)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, 보고, 지휘, 증거관리, 사건기록 열람,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부당한 지시·요구 또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수사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재배당, 직무배제, 수사정보 접근 제한,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, 관여 제한, 부당한 지시·요구 또는 청탁 금지, 수사정보 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4조의2(친족 등 관련 사건의 신고 및 부당 관여 금지) ① 경찰공무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, 보고, 지휘, 증거관리, 사건기록 열람, 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③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부당한 지시·요구 또는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수사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재배당, 직무배제, 수사정보 접근 제한,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</u>

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
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
신고, 관여 제한, 부당한 지시·
요구 또는 청탁 금지, 수사정보
접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